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7등급"을 "6등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	제11조(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
상자)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	상자)
제2조제1항제5호에서 "금융위	
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	
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"란	
대출신청일 현재 「신용정보의	
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	
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	
자(이하 "신용조회회사"라 한	
다)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1개	
이상의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	
한 신용등급이 <u>7등급</u> 이하에 해	<u>6등급</u>
당하는 자를 말한다.	